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3월 1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3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3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 제안이유

- 2005년 1월 7일 행정자치부에서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증원하고
-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총 정원 : 1,986명 ⇒ 1,995명 (+9)
 - 집행기관 : 1,967명(+9) - 의 회 : 28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3조 및 별표)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조례개정시 시 본청 실국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p>	<p>○ 현재 5국 1사업소 22과에서 1개과 늘어 5국 1사업소 23과가 되는 것입니다.</p>
<p>○ 총무국 시민봉사과 민방위팀이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자체가 이관되는 것인지?</p>	<p>○ 하수과의 재난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로 갔다가 조직진단이 완료되면 향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p>
<p>○ 구청의 경우 재난업무가 건설과로 가게 되면 업무 과부하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을 판단되는데?</p>	<p>○ 조직진단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에 조직진단이 끝나면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p>
<p>○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은 전국 지방 자치단체가 모두 해당되니까?</p>	<p>○ 네, 그렇습니다.</p>
<p>○ 조직개편이 5월달에 완성되는데 굳이 지금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p>	<p>○ 재난안전관리과 설치가 시급성을 요하고 이번 기회에 인사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p>
<p>○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은 것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는지요?</p>	<p>○ 유효기간은 없습니다.</p>
<p>○ 재난안전관리과를 승인해준 것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것으로 업무상 직원을 기술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p>	<p>○ 조직진단을 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현재 시 정부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어업무의 효과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업무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재난관리업무는 언제, 어디서 발생하지 모르는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업무이므로 조직진단과 관계없이 행정자치부 승인한대로즉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행정자치부에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승인해준 취지는 그 지역의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승인해준 것으로 현재 조직진단이 진행중 으로 2개월 후에 다시 행정기구개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굳이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됨.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1호
의결 년월일	2005.3.24 (제118회)

제출년월일 : 2005. 3. 1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2005년 1월 7일 행정자치부에서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총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함.

(안 제2조)

· 총 정원 : 1,986명 ⇒ 1,995명 (+9)

- 집행기관 : 1,967명(+9) - 의 회 : 28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세부적으로 정함.

(안 제3조 및 별표)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1,986명”을 “1,995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958명”을 “1,967명”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관련)

(단위 : 명)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청	동
총 계	1,995	490	28	101	331	656	389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616	391	18	90	199	533	385
2급	1	1					
3급							
4급	13	5	1	3	1	3	
5급	105	23	2	7	13	23	37
6급	341	97	5	18	50	134	37
7급	532	158	7	27	82	146	112
8급	390	97	3	31	39	160	60
9급	234	10		4	14	67	139
별정직 계	4	3			1		
5급상당							
6급상당	1	1					
7급상당	3	2			1		
8급상당	-						
연구직 계	2				2		
연구원							
연구사	2				2		
지도직 계	8				8		
지도관							
지도사	8				8		
기능직 계	364	95	10	11	121	123	4
기능6급	10	5			4	1	
기능7급	33	13			11	8	1
기능8급	54	16	3		15	18	2
기능9급	117	28	6	4	46	32	1
기능10급	150	33	1	7	45	6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u></p> <p>제2조(정원)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1,986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958명</u></p> <p>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u></p> <p>제2조(정원) ----- -----<u>1,995명</u>----- -----.</p> <p>1. ----- <u>1,967명</u></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집행기관 및 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margin-top: 20px;"><u><신 설></u></p>	<p>제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p> <p style="margin-top: 20px;">제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